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설명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7. 14.(수)	담당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조상준(044-203-3151)	담당자	사무관 박효진(044-203-3156)

거리두기 4단계, 음악속도 제한 방역수칙은 헬스장 영업장 음악(배경음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악속도 제한은 단체운동 프로그램(GX) 진행 시 적용 -

세계일보, 머니투데이는 2021년 7월 14일(수) 자 <비티에스(BTS)는 되고 블랙핑크는 안 돼...음악속도 제한에 현장에서 찾은 묘수는>, <박효진 노래 나오는 '애절한 헬스장'...해외 언론도 '비현실적'>이라는 제목으로 “헬스장에서 유튜브에 있는 120비피엠(bpm) 노래모음 틀어”, “부실한 논의 과정... 전형적인 탁상행정”, “빠른 노래 튄다고 침방울 더 많이 튀는 건 아닌데... 황당한 헬스장 업주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음악속도 100~120비피엠(bpm) 유지 방역수칙은 빠른 음악에 맞춰 단체운동 프로그램(GX: 그룹 댄스 운동, 에어로빅, 스피닝 등)을 강습할 때 적용되는 수칙으로, 헬스장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에서 영업장 음악(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음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동 강도 조절을 위한 러닝머신 시속 6킬로미터(km) 속도제한, 단체운동 프로그램 음악속도 100~120비피엠(bpm) 유지 등의 방역수칙은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없이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영업과 방역을 병행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고강도의 격렬한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수칙 적용 과정에서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업계 및 방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박효진(☎ 044-203-315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